



제00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방법 구체화 등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62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방법 구체화 등	3

I. 제안경위

2025년 1월 15일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6항·제7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구성방법 구체화 등(안 제14조제6항·제7항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구성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근로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한 사람’을,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4조 제6항·제7항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근로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u>
<u><신설></u>	<u>⑦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용</u>

⑥ <u>위원의 자격과 임명·위촉 등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전문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u>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u>,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본다.	<u>노동부장관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u> ⑧ 그 밖에 <u>위원의 자격과 임명·위촉 등</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전문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제14조제3항</u> <u>부터 제5항까지·제8항</u>----- -----. -----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두고 있음.¹⁾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됨. 이때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

1) 「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위촉함. 사용자위원회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²⁾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함.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관련 법 조문]

「최저임금법」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

2)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4조(사용자단체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4.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 지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19호, 2019.3.29.제정)」

1. 한국경영자총협회
2. 한국무역협회

④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공익위원의 위촉기준)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10년(제2호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현행법령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는바 이는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노사측 위원이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때 개정안은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원 구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근로자위원의 추천권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로, 사용자위원의 추천권을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 변경하여 각 위원의 대표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개별 노동조합에 비해 다양한 산업과 직역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법적 의의가 있고, 정책심의 및 결정 과

정에서 노동자 권익의 집단적인 반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위원 추천권이 현행법령에 따른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 확대되어, 사용자 권익의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총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 노동조합 조합원이 전체 노동조합원의 17.5%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 추천권을 법률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3년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 비교 >

구 분	인원수	비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160,162명	4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086,618명	39.7%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7,821명	0.3%
전국노동조합총연맹	1,441명	0.1%
국민통합노동조합총연맹	1,068명	0.0%
대한민국노동조합총연맹	511명	0.0%
미가맹	479,758명	17.5%
합 계	2,737,379명	100%

자료 : 고용노동부, 『2023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2024.12.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노사측 위원이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하여는 추천권의 폭넓은 확대가 필

요하므로 노·사 양측의 입장과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추천권 확대의 균형과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준은 이미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0